

일본의 무형민속문화재의 속성과 문제점*

세키네 히데유키**
sekine@gachon.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2 한중일을 연결하는 도작문화 |
| 2. 무형민속문화재의 위상과 기준 | 4. 의례의 예능화 사례 |
| 2.1 문화재 체계 속의 위상 | 4.1 벼농사의 예축(豫祝) 의례 |
| 2.2 '지정' 및 '선택' 된 문화재 | 4.2 원초적 의례 |
| 2.3. 법적 기준: 생활문화와 예능화 | 4.3 예능화가 진행된 의례 |
| 3. 생활문화로서의 도작문화 | 5. 마치며 |
| 3.1 도작문화의 위상 | |

主題語: 무형민속문화재(intangible folk cultural asset), 민속학(folklore), 민간전승(folklore), 야나기타 구니오 (Yanagita Kunio), 도작문화(rice culture), 다아소비(Taasobi), 엔부리(Enburi)

1. 들어가며

‘민속학’은 한국에서 “예로부터 민간에 전승되어온 풍속제도습관신앙 따위를 조사, 기록하여 민족의 전통적 문화를 구명하려는 학문(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민속학」)¹⁾”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나 인접학문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국가마다 다양한 명칭을 지닌 민속학 관련 학문들이 된 바 있다.²⁾ 이러한 학문들은 19세기 구미를 중심으로 탄생하였는데 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속성들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타 사회과학처럼 국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라마다 독자적 발전을 겪어 왔다는 점이다.³⁾ 그 이유는 이러한 학문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주의 제고를 계기로 탄생한 것으로, 원래부터

* 이 글은 2014년 2월 13일, 경상대학교에서 개최된 경남일본 및 (사)경남학연구원 주최 국제학술심포지엄 ‘지역전통문화의 현재와 미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임.

** 가천대학교 동양어문학과 교수

1)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검색일, 2014. 3.20)

2) Volkskunde, Folklorismus, folklore, folkloristics 등

3) <http://ja.wikipedia.org/wiki/%E6%B0%91%E4%BF%97%E5%AD%A6>(검색일, 2014. 3.20)(ウエキペディア 「民俗学」)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1936~)이 말한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 조성을 위한 지식체계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속학은 새로운 지식체계의 산출에 그치지 않고 민속문화의 보호 시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부터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공적자금 투입으로 민속문화재를 보호해 왔던 경위가 있다.⁴⁾ 비록 상상의 공동체를 조성하려는 시대는 지나갔지만 이러한 시책에 근대적인 관념이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그것이 근대 일본민속학의 영향 하에 구축되어 있다면 그 학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도 거기에 계승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서 법적 근거를 실마리로 일본의 민속문화재의 속성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일본에서는 민속문화재가 하위개념으로 ‘무형’과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무형민속문화재’에 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문화재 체계 속의 무형민속문화재의 위상이나 종류를 살펴본 다음 지정 기준으로 중시되고 있는 ‘생활문화’와 ‘예능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일본민속학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본의 생활문화에서 큰 위상을 지니고 있는 도작문화(稻作文化)가 외래문화로서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과 어떤 계통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개관한 다음, 무형민속문화재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도작의례의 예능화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민속학과의 관련성이란 관점에서 일본의 민속문화재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범아시아적 시야에 입각한 문화재 시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4) 일본에서 민속문화재가 문화재보호의 대상이 된 것은 1950년의 문화재보호법 제정부터였다. 그 때 현재의 민속문화재는 ‘민속자료’로서 ‘건조물’이나 ‘미술공예품’과 나란히 유형문화재의 하나로 간주되어 있었다. 그러나 1954년의 개정(제1차 개정)에서 유형의 민속자료 보호에 관한 제도를 유형문화재 ‘지정’제도에서 분리시켜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제도가 발족되었다. 아울러 무형민속자료에 관해서는 ‘기록 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무형의 민속자료’의 ‘선택’제도가 발족되었다. 1975년의 개정(제2차 개정)에서는 종래의 ‘민속자료’가 ‘민속문화재’로 개칭되고 종래의 중요민속자료는 ‘중요유형민속문화재’로 정립되었다. 또한 새롭게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지정’제도가 설치되는 등 민속문화재제도가 정비되었다. 2005년의 개정에서는 중요유형민속문화재 ‘지정’제도를 보완하는 등록 유형민속문화재제도가 발족되었다.

<http://ja.wikipedia.org/wiki/%E6%B0%91%E4%BF%97%E6%96%87%E5%8C%96%E8%B2%A1>(검색일, 2014. 3.20)(ウエキベディア「民俗文化財」)

2. 무형민속문화재의 위상과 기준

2.1 문화재 체계 속의 위상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5.30, 법률 제214호)’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문화적 경관’ 및 ‘전통적 건조물’ 6개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이 논문의 주제인 ‘무형민속문화재’는 이러한 영역 중에서 민속문화재에 속한다. 우선, 이와 유사한 영역인 ‘무형문화재’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이면서 일본에서 역사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노가쿠(能樂)나 카부키(歌舞伎), 조류리(淨瑠璃) 등의 전통예능이나 도자기, 칠기 제작 등의 전통공예를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 민속예능, 민속기술 및 이것들에 사용할 수 있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로 일본 국민의 생활 전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동법 제2조 제1항 제3호)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위개념인 무형민속문화재는 이 전반 부분인 풍속관습, 민속예능, 민속기술에 해당되며 예를 들어서 정월행사, 민속춤, 농경의례 등을 들 수 있다.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⁵⁾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다. 그러면 일본의 무형문화재와 무형민속문화재가 구별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 양자의 차이로서 ‘무형문화재’는 고도로 세련된 기술을 가지는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보유자’로서 인정하나, ‘무형민속문화재’는 풍속관습, 민속예능, 연중행사 등, 서민 생활, 관습, 행사 그 자체가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무형문화재는 단지 ‘일본에서 가치가 높은 것’이라는 규정이 제시되고 있는데 비해 민속문화재는 ‘일본 국민의 생활 전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로 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사실, 이러한 문화는 일본민속학이 전통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아왔던 ‘민간전승’을 가리킨다. 민간전승은 일본민속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 1875~1962)가 만든 조어⁶⁾로써 상층문화가 아니라 생활문화 내지

5) 2003년 제32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하며 특히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a)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b) 공연 예술, c) 자연과 우주에 관한 사회적 관습, d)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e) 전통 기술

기층문화를 가리킨다(平山和彦 1999b:632). 즉 서민들 사이에 계승되어온 문화란 뜻으로 카부키와 조류리와 같은 상층문화와 구별된다.

문화재보호법이 정착해 온 1950~70년대는 급변하는 사회에 의해 민간전승이 소멸된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어 있던 가운데 이것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정착되어 있었던 것이다.⁷⁾ 이러한 국내 사정으로 인해 무형문화재와 별개로 무형민속문화재를 설치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민속학은 원래 근대 민족주의가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학문이었으나 고도경제성장을 거치면서 또 다른 의미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공식적 지식체계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2.2 ‘지정’ 및 ‘선택’된 문화재

문화재 중에서 특히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데 무형 민속문화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지정’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록 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무형의 민속문화재(통칭 선택무형민속문화재)’의 ‘선택’제도이다. 전자는 국가가 지정해 보호 조치를 하는 제도이며, 후자는 문화청 장관이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이외의 무형 민속문화재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여 지방자치체의 조사사업이나 기록 작성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정’된 ‘중요 무형 민속문화재’와 ‘선택’된 ‘선택 무형 민속문화재’는 1950년부터 2013년 3월 현재까지, 전자는 286건, 후자는 610건에 이른다.⁸⁾ 문화청은 무형민속문화재를 ‘풍속습관’, ‘민속예능’, ‘민속기술’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다시 그 하위 영역으로 17개로 분류하고 있다. 분류에 사용된 용어들은 한국에 없는 것이 있으며 있다 하더라도 한국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즉 풍속습관을 생산·생업, 인생의례, 오락경기, 사회생활(민속지식), 연중행사, 제례(신앙)⁹⁾, 기타로, 민속예능을 가구라(神樂)¹⁰⁾, 텨가쿠(田楽)¹¹⁾, 후류(風流)¹²⁾, 가타리모노(語り物)¹³⁾, 슈쿠후쿠게이(祝福藝)¹⁴⁾, 엔넨

6) tradition populaire[佛의 populaire를 ‘민간’으로, tradition에는 전통이란 말을 피하여 ‘전승’으로 번역하였다.

7) <http://ja.wikipedia.org/wiki/%E9%87%8D%E8%A6%81%E7%84%A1%E5%BD%A2%E6%B0%91%E4%BF%97%E6%96%87%E5%8C%96%E8%B2%A1>(검색일, 2014. 3.20)(ウエキペディア「重要無形民俗文化財」)

8) 지방자치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이나 시구정촌(市區町村)도 ‘무형민속문화재’를 ‘지정’하고 있다.

9) 한국의 제례와 달리 신사 등의 마쓰리(祭)

10) 신에게 제사지낼 때 연주하는 무악(舞樂)

11) 모내기 축제 무악

12) 후류오도리(風流踊り, 후류 춤)의 학술용어로서 소위 ‘풍류’와는 다르다. 오봉(お盆, 백중맞이) 때 춤추었

(延年)¹⁵⁾·오코나이(おこない)¹⁶⁾, 도라이게이(渡来芸)·부타이게이(舞台芸)¹⁷⁾, 기타로, 그리고 민속기술을 생산·생업, 의식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가 어떤 학술적인 근거로 도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러한 분류에 따른 건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일본 무형민속문화재의 건수(2014.3.10 현재)¹⁸⁾

영역	하위영역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선택무형민속문화재	합계
풍속관습	생산·생업	6건	49건	55건
	인생·의례	6건	15건	21건
	오락·경기	8건	14건	22건
	사회생활(민속지식)	2건	14건	16건
	연중행사	31건	47건	78건
	제례(신앙)	63건	99건	162건
	기타	0건	1건	1건
민속예능	가구라(神樂)	33건	66건	99건
	덴가쿠(田楽)	25건	45건	70건
	후류(風流)	36건	119건	155건
	가타리모노(語り物) · 슈쿠후쿠게이(祝福芸)	5건	8건	13건
	엔넨(延年) · 오코나이(おこない)	7건	14건	21건
	도라이게이(渡来芸) · 부타이게이(舞台芸)	36건	78건	114건
	기타	16건	36건	52건

기 때문에 사실상 붕오도리(盆踊り)라고 할 수 있다. 단 당시로서는 후류오도리 혹은 붕오도리라는 명칭이 없었다. 16세기의 교토(京都) 민중 사이에 유행하다가 센고쿠다이묘(戰國大名)에 의해 지방으로 전파되어 에도(江戸)시대에 쇠퇴하였다.

- 13) 일본의 성악곡에 하나의 계통으로,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가락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것.
- 14) 축복을 외는 말이나 찬양하는 말을 내용으로 하는 예능. 고대에는 집집의 문 앞에서 축언을 외는 ‘호가이비토(まがひ人)’라고 하는 직능자가 있었는데 에도(江戸)시대가 되면서 그 종류가 더욱 늘어났다. 연말부터 연시에 걸쳐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여 방문지에서 축복 기예를 하여 생계를 유지했다.
- 15) 사찰에서 범회 후에 승려나 동자승들이 행했던 유연(遊宴)의 가무. 헤이안(平安) 시대 중기에 발생하여 가마쿠라(鎌倉)·무로마치(室町) 시대에 성행하여 이후 쇠퇴했다.
- 16) 긴키(近畿)지방을 중심으로 연두 또는 봄 초에 행해지는 기도행사. 주로 절의 본당에서 행하여지지만 원래는 농사를 기원해서 신에게 제사지내는 의례였다.
- 17) 도라이게이(渡来芸)는 부가쿠(舞樂)나 노우(能)·교겐(狂言)·닌교시바이(人形芝居) 등을 가리키는데 중국이나 한국 등에서 도래한 시기는 8세기 전후로 추정된다.
- 18) 문화청 국지정문화재등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성.(http://kunishitei.bunka.go.jp/bsys/index_pc.asp(검색일, 2014. 3.25)(文化庁 國指定文化財等データベース)

민속기술	생산생업	10건	4건	14건
	의식주	2건	1건	3건
	기타	0건	0건	0건
합계		286건	610건	896건

2.3 법적 기준: 생활문화의 예능화

그러면 무형민속문화재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 및 ‘선택’되었을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지정’ 기준(문부성 고시 제156호 1975)¹⁹⁾ 및 선택무형민속문화재의 ‘선택’ 기준(문화재보호위원회 고시 제59호 1954, 1975 개정)²⁰⁾은 각각 <표 2> 및 <표 3>과 같다.

< 표 2 >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지정’ 기준

1. 풍속관습 중에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면서 특히 중요한 것
 - (1) 유래 내용 등에서 일본국민의 기반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보여주면서 전형적인 것.
 - (2) 연중행사, 제례, 법회 등에서 행해지는 행사 중에서 예능의 기반을 보여주는 것.
2. 민속예능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고 특히 중요한 것.
 - (1) 예능의 발생 또는 성립을 보여주는 것.
 - (2) 예능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것.
 - (3)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것.

19) ‘지정’에 이르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정’ 후보 검토 → 현지조사 → 사무국 초안 작성 → 문화청 내 결재 → 차관 결재 → 정무관부대신(副大臣) 결재 → 문부과학 대신(大臣)에서 문화심의회에 자문 → 문화심의회에서 제5전문조사사회에게 심의 의뢰 → 제5 전문조사사회에서 심의한 후 문화심의회에 보고 → 문화심의회에서 문부과학대신에 답신 → 판보에 고시 → ‘지정’ 증서교부

20) ‘선택’에 이르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선택’ 후보검토 → 현지조사 → 사무국 원안작성 → 문화청내 결재 → 문화청장관에서 문화심의회로 자문 → 문화심의회에서 제5 전문조사사회로 심의의뢰 → 제5전문조사사회에서 심의한 후 문화재심의회에 보고 → 문화재 보호심의회에서 문화청 장관에게 답신 → 선택서 교부

< 표 3 > 선택무형민속문화재의 ‘선택’ 기준

1. 풍속관습 중에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면서 중요한 것.
 - (1) 유래 내용 등에서 일본국민의 기반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보여주면서 전형적인 것.
 - (2) 연중행사, 제례, 법회 등에서 행해지는 행사 중에서 예능의 기반을 보여주는 것.
2. 민속예능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고 중요한 것.
 - (1) 예능의 발생 또는 성립을 보여주는 것.
 - (2) 예능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것.
 - (3)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것.
3. 무형의 민속문화재 가운데 앞의 2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중요유형민속문화재의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것.
4. 다른 민족과 관련되는 앞의 3항에서 규정하는 무형민속문화재이면서 일본국민의 생활 문화와의 관련성에서 특히 중요한 것.

위와 같이 ‘특히 중요한 것’라는 용어가 보여주듯 전자가 후자보다 중요성이 높다는 점, 후자에 ‘중요유형민속문화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제3항)’ 및 ‘다른 민족과 관련되는 무형민속문화재(제4항)’가 추가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면 거의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형민속문화재는 풍속관습, 민속예능, 민속기술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설정된 것은 아니었다. 1954년의 문화재보호법 개정 당시에는 풍속관습만 있었다가 1975년의 개정 때 민속예능이, 2004년의 개정 때 민속기술이 각각 추가된 것이다. 민속기술의 ‘지정’ 및 ‘선택’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전혀 없고 건수도 적은 것은 이러한 분류가 제시 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풍속관습과 민속예능이 어떤 기준으로 ‘지정’ 및 ‘선택’되고 있는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풍속관습의 기준으로는 1-(1)에서 “일본국민의 기반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민간전승을 보호한다는 원래의 취지에서 부합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민속학에서 사용했던 민간전승을 풀어서 ‘일본국민의 기반적 생활문화’란 용어로 수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1-(2)에서 “예능의 기반”을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1975년의 개정 때는 2에서 ‘민속예능’이라는 영역을 설정하면서 예능에 관한 발생, 성립, 변천 등 중점적으로 ‘지적’ 및 ‘선택’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의 사례와 대조하고자 한다. 한국의 ‘민속문화재’ 정의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문화재보호법 제2조)'으로 되어 있으며 민속문화재는 특별히 '무형'과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지 않다.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 기준은 "한국민족의 기본적인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이면서 "역사적 변천",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 "생활계층의 특색"의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동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이처럼 두 나라의 민속문화재의 '지정' 기준을 비교할 때 생활문화의 토대를 강조하고 있는 점은 공통되지만 민속 현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 달리 일본에서는 지나치게 예능에 지우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속이 변화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마치 민속의 변화가 예능의 변천과정 밖에 없는 것처럼 언급되어 있다.

아마도 그 배경에 야나기타가 제창하여 오랫동안 민속학의 연구방법으로 굳어진 '중출립증법(重出立証法)'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는 어떤 민속 사상에 관하여 일본전국의 유사한 사례를 모아서 분류하여 그 유형간의 이동(異同)이나 분포 차이에서 해당 민속의 변천 과정을 밝히는 방법이다(佐野賢治 1999:817).

문화재보호법은 '지정' 및 '선택'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일본민속학의 연구방법인 중출립증법에 따라 민속의 변천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때 여러 종류가 있는 민속의 변천현상 중에서 굳이 예능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것이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항목이라는 공감대가 학계에 존재했던 것은 틀림없다.

요컨대 일본의 무형민속문화재의 '지정' 및 '선택' 기준으로서의 생활문화와 예능화가 중시되어 있으며 그것은 일본민속학에서 연구 대상이나 방법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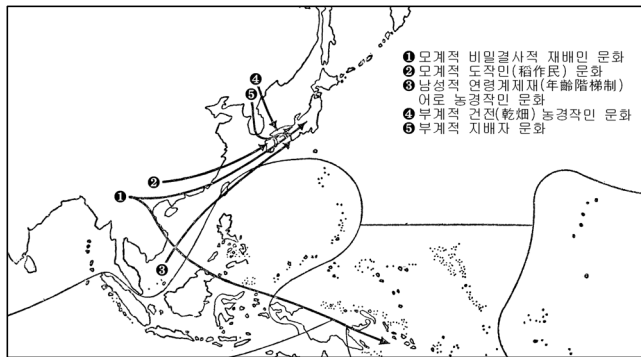
3. 생활문화로서의 도작문화

3.1 도작문화의 위상

그러면 '일본국민의 기반적 생활문화'란 무엇일까? 이러한 문화를 '기층문화'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는 '전승으로 성립되어 생활에 밀착한 문화'라 요약할 수 있는데(平山和彦 1999a:463) 일본의 기층문화는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성되어 온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 기원을 따지면 일본 고유한 것이 아니라 일본열도 밖에서 전파된

여러 문화들이 혼합됨으로써 형성되었다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사시대의 일본 민족문화의 다원성에 관한 가설을 처음으로 제시한 연구자가 오카 마사오(岡正雄, 1898~1982)인데²¹⁾ 그는 1958년에 기층문화 수준의 일본문화를 다음의 여러 개의 ‘문화복합(cultural complex)’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일본의 토착문화로 ‘무토기 문화’와 ‘조몽식(繩文式) 토기문화’를 설정하여 후대에 일본열도 밖에서 들어온 것으로 ❶ ‘모계적·비밀결사적·재배민 문화’, ❷ ‘모계적 도작민(稻作民) 문화’, ❸ ‘남성적·연령계제(年齡階梯制)·어로 농경작민 문화’, ❹ ‘부계적·건전(乾田) 농경작민 문화’, ❺ ‘부계적 지배자 문화’라는 다섯 가지의 문화복합들을 가상하였다(岡正雄 1979:18-36).



<그림 1> 오카의 ‘일본 민족문화의 기초구조’

<그림 1>은 일본 기층문화의 원안으로써 후학들에 의해 수정되었으나 여전히 모두가 인정한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복합들이 일본의 생활문화의 기반으로서 모두 균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산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열도에서는 농경뿐만 아니라 어업, 수렵도 발달되었으며 농경의 경우도 벼농사 외에 밭농사도 적지 않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 연구자들은 벼농사에 수반된 문화, 즉 도작문화(稻作文化)가 일본 민족문화의 핵심이며 기타 문화가 그것에 수렴되어 왔다고 생각했다.²²⁾ 이에 따라 민속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도 도작문화와 관련된 것에 몰리게 되었다.

21) 필자는 오카의 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전의 도리리 류조(鳥居龍藏, 1870~1953)의 일본민족 기원론을 계승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세키네 히데유키 2011:557-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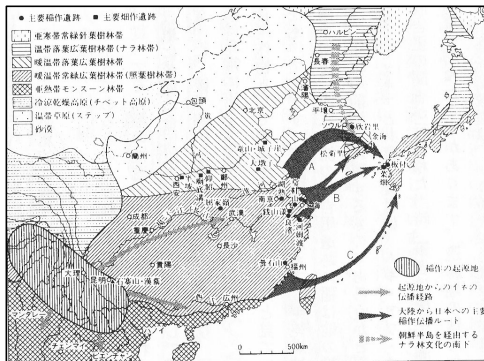
22) 전형적인 예로서 야나기타 구니오나 민족학자 이시다 에이치로(石田英一郎, 1903~1968)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도작문화 일원론은 지나친 극단론으로서 80년대부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3.2 한중일을 연결하는 도작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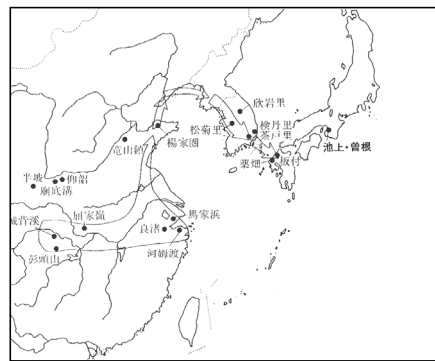
주지한 바와 같이 벼농사는 토착문화가 아니라 외래문화 중 하나이다. 오카의 모델로 말하자면 ②와 ③이 이에 해당되는데 지금까지 오카 외에도 벼농사의 일본 전파에 대해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아직 고고학적 성과가 축적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중국 화북(華北)에서 한반도를 거쳐 전파된 경로²³⁾, 중국 강남을 기원으로 쓰시마(對馬) 해류를 따라 규슈 북부와 한반도에 동시에 전파된 경로²⁴⁾, 동중국해를 거쳐 전파된 경로²⁵⁾가 제시되었으며 이들은 고전적 견해로 간주되고 있다.

이어서 와타베 다다요(渡部忠世, 1924~)는 농학적 입장에서 벼농사의 기원을 인도 아삼(Assam)에서 중국 윈난성(雲南省)에 이른 고지에서 찾았다. 민족학자 사사키 고메이(佐々木高明, 1929~2013)는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여 <그림 2>와 같은 가설을 발표하여 얼마 전까지 적지 않는 영향력을 가졌다(佐々木高明 1993:96).

한편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70년대부터 잇따른 발견에 따라 벼농사의 기원은 중국 장강 중하류 지역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고고학자 엔원밍(嚴文明)은 <그림 3>와 같이 산둥반도(山東半島)에서 랴우둥반도(遼東半島), 한반도 서북부, 한반도 남서부, 규슈(九州) 서북부로 이르는 경로를 제시하였다.



<그림 2> 사사키의 벼농사 전파 경로설



<그림 3> 엔원밍의 벼농사 전파 경로

23) 고고학자 하마타 고사쿠(浜田耕作, 1881~1938)의 견해
 24) 농학자 안도 고타로(安藤広太郎, 1871~1958)의 견해
 25) 민족학자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 1875~1962)의 견해

이 벼농사의 기원과 전파경로에 관하여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체로 전파경로가 중국, 한국, 일본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삼국 모두가 도작문화를 매개로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도작문화에 관련된 민속도 동아시아 내에서 계통관계가 추적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도작문화의 일본 전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전파 당시의 벼농사가 초기 단계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논터(水田址)²⁶⁾에서는 수로, 농기구, 탈곡기구, 돌칼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전파된 당시의 벼농사가 거의 완성된 상태였음을 말해준다(白石太一郎 2006:10). 이는 당시 도작문화에 포함되어 있었던 민속 역시도 상당히 발전된 상태였을 것으로 상상하게 한다. 따라서 벼농사의 기술뿐만 아니라 도작농경에 수반되는 민속도 동아시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의례의 예능화 사례

4.1 벼농사의 예축(豫祝) 의례

무형민속문화재에서 예능화가 중요시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여기서 그 사례로서 도작의례(稻作儀禮)의 예능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한 바와 같이 벼농사에는 재배되는 지역이나 나라를 막론하고 농경의례가 수반된다. 농민들은 자연이나 신의 혜택이 없으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벼농사에는 농사를 통솔하는 신을 찬양하는 제사가 수반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다아소비(田遊ひ)’라고 하는 농경의례가 도처에 산재되어 있다. 이는 연초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벼농사의 작업과정을 미리 모의적으로 행함으로써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례이다. 이러한 의의로 행해지는 의례를 학술적으로 ‘예축(豫祝)’이라고 한다. 일본전국에 300곳을 넘게 확인되고 있으며 연초 외에 모내기 때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다아소비라고 하는 호칭은 주로 혼슈(本州) 중앙부에서 태평양 측에서 사용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오타(御田)²⁷⁾·다우에마쓰리(田植え祭り)·하루스키(春鋤)·하루타우치(春田打ち)²⁸⁾·다우에오도

26) 사가현(佐賀県) 가라쓰시(唐津市) 나바타케(菜畑) 유적으로 2500년~26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7) ‘御田’는 오타미타오미타온타온다오멧 등으로 읽는데 원래 사찰, 신사, 황실 등이 소유하는 논에서 행해지는 행사였다. 일반적으로 ‘오멧’으로 읽었을 경우는 요리의 오멧을 가리킨다.

28) 정월에 1년의 벼농사 과정을 흉내 내서 실현하며 풍작을 기원하는 행사

리(田植踊り)²⁹⁾·다우에신지(田植神事)·엔부리(えんぶり)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그 형태에 차이는 있으나 의례의 핵심적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벼농사의 모든 과정을 상징적으로 연출하는 데 있다. 의례성이 강한 원초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예능화가 진행되어 의례라기보다 예능에 가까운 것도 있다. 여기서는 전자의 대표로서 도쿄도(東京都) 이타바시구(板橋區)의 ‘다아소비’를, 후자의 대표로서 아오모리현(青森縣) 하키노헤시(八戸市)의 ‘엔부리’를 통해서 도작의례의 다양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4.2 원초적 의례

이타바시(板橋)³⁰⁾의 다아소비는 1971년에 선택무형민속문화재에 ‘선택’된 후, 1976년에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대표적인 예축 행사이다. 이는 두 곳의 신사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2월 11일에 도쿠마루(徳丸) 지구의 기타노신사(北野神社)에서, 다른 하나는 2월 13일에 아카쓰키(赤塚) 지구의 스와신사(諏訪神社)에서 행해진다. 이들은 모두 밤에 행해지는데 그 이유는 이 의례가 원래는 주술적인 비밀의례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쿠마루(徳丸) 기타노신사(北野神社)의 의례 절차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사의 참배당 앞에 청죽을 세워 금줄을 둘러친 모가리³¹⁾라고 하는 무대가 설치된다. 이것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종교의식이 행해지는 성역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 중앙에 북을 세워서 가죽을 씌운 면을 눈에 비한다. 1년간 이루어지는 농사의 모의적 의례가 이 북의 주위를 돌면서 행해진다. 그 때 맞이한 농신을 즐겁게 함으로써 벼의 풍년을 기원한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히타타레(直垂)³²⁾라는 의상과 에보시(烏帽子)³³⁾란 모자의 전통 옷차림으로 의례를 진행한다.

그 행사는 조보시라베(町歩調べ, 못자리 수 조사), 다우치(田打ち, 일구기), 다우나이(田うない, 경작), 시로가키(代かき, 씨레질), 우시오이(牛追い, 소몰이), 다네마키(種まき, 파종), 도리오이(鳥追い, 새 쫓기), 이네카리(稲刈り, 벼베기), 이나무라쓰미(稲むら積み, 벼단 쌓기), 하라미온나(孕み女, 임신부), 도아게(胴あげ, 행가래) 등의 순서로 약 2시간 정도 이루어진다<그림 4>.

29) 주로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정월대보름 때 행해지는 예축 예능. 모의적으로 벼농사 절차를 연출하는 의례와는 달리 예능화가 발달되어 있다. 마을의 청년이나 소년 소녀가 민가를 순회하며 노래에 따라 춤을 춘다.

30) 이타바시구는 현재는 도시화가 진행되어 있지만 근대까지 광활한 곡창지대였다.

31) 원래 ‘모가리’는 귀인을 매장하기 전에 사체를 임시 안치하는 곳으로 특수한 삶과 죽음의 경계 공간영역이었다. 이를 따서 여기서는 비밀상적 공간을 확보하는 무대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32) 주로 무가사회에서 사용된 남성용 의복으로서 일본의 전통적 장속(裝束)의 하나이다.

33) 옛날에 귀족과 무사가 쓰던 두건(頭巾)의 일종. 나라(奈良)시대 이후에는 일반 서민들도 사용했으며, 지금도 간누시(神主)가 쓴다.

 <p>행사 무대</p>	 <p>조보시라베(못자리 수 조사)</p>	 <p>다우나이(경작)</p>
 <p>다네마키(파종)</p>	 <p>우시오이(소몰이)</p>	 <p>이네카리(벼베기)</p>
 <p>이나무라쓰미(벧단 쌓기)</p>	 <p>하라미온나(임산부)</p>	 <p>도아게(헝가래)</p>

<그림 4> 이타바시(板橋)의 다아소비(田遊³⁴)

4.3 예능화가 진행된 의례

엔부리는 하치노헤시(八戸市) 일원을 중심으로 도호쿠(東北)지방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예축 행사이다. 1971년에 선택무형민속문화재에 ‘선택’된 후, 1979년에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 받았다. 현재는 관광적 색채가 짙은 행사가 되었지만 원래는 의례성이 강한 다아소비의 하나였다고 한다.

그 순서는 우선 2월17일 이른 아침에 30을 넘는 조(組)가 하치노헤시의 조자야마(長者山) 신라신사(新羅神社)에 참배한다. 그 후 하치노헤시내의 상점가에서 일제히 춤을 추고 난 다음에 근교 농촌에 들어가 문간에서 춤을 추고 금품을 받으면서 순회한다고 한다. 이러한 순서가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시내의 도처에서 행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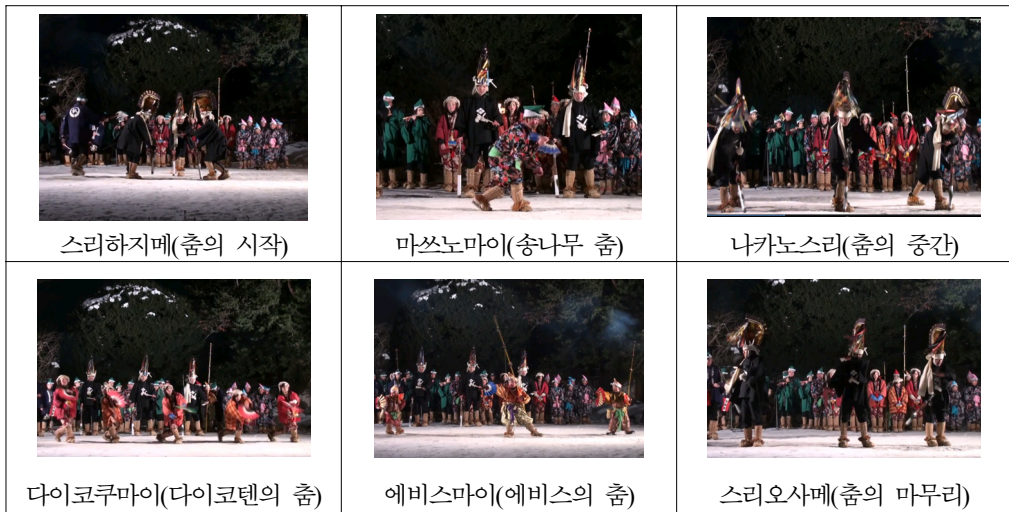
편성은 춤꾼, 반주꾼, 노래꾼 등 총 20~30명으로 이루어진다. 농사에 활약한 말의 목을 본

34) <http://members2.jcom.home.ne.jp/ichikondo/02%20tasobikitanojinnja.html>(검색일, 2014. 3.30)

딱 큰 에보시 모자를 쓴 춤꾼 3~5명이 피리, 북, 팽과리 등의 반주와 노래에 맞추어 잔기(ジャンギ)라고 하는 막대기를 땅에 치거나 문지르면서 웅장하게 춤춘다. 그들은 다유(太夫)라고 하며 행사 중에 다유는 잔기를 들면서 춤을 추는데 이것은 모내기 전에 논을 고르기 위해서 사용했던 에부리(柄振 또는 杵)라는 농구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엔부리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유래된다고 한다.

춤을 추는 것을 ‘스리(擲り)’라고 하는데 다유노마이(太夫の舞, 다유의 춤)에 이어 스리하지메(擲り始め, 춤의 시작), 나카노스리(中の擲り, 춤의 중간), 스리오사메(擲り納め, 춤의 마무리)라는 순서로 이어진다. 스리하지메는 축가(祝歌)를 부른 다음에 못자리에 씨를 뿌려서 벼모가 성장하여 씨레질을 할 때까지를 표현하며 나카노스리는 모내기 동작을 나타낸다. 그리고 스리오사메는 벼베기와 곡식을 창고에 거둬들인 노동을 연출한다.

이러한 스리와 스리 사이에는 삽입되는 여러 여흥 예능들이 있다. 마쓰노마이(松の舞, 송나무의 춤), 에비스마이(恵比須舞, 에비스의 춤)³⁵⁾, 다이코쿠마이(大黒舞, 다이코쿠텐의 춤)³⁶⁾ 등의 춤이나 모내기의 모습을 익살스러운 만담인 타우에만자이(田植漫才, 모내기 만담), 짙은 화장을 한 아동 춤인 엔코엔코(エンコエンコ) 등이 있다<그림 5>.



<그림 5> 하치노헤(八戸)의 엔부리(えんぶり)

35) 에비스(恵比須)는 원래 풍어신이었으나 일본의 민간신앙에서 복덕신인 시치후쿠진(七福神)의 하나가 되어 생업을 지키며 복을 불러들이는 신이 되었다. 에비스마이는 근세에 걸쳐 정월에 에비스로 분장하여 집집을 순회하면서 추었던 춤이다.

36) 다이코쿠는 다이코쿠텐(大黒天)의 약칭으로 원래 힌두교의 신인 마하칼라(Mahakala)이었으나 일본의 민간에서 시치후쿠진(七福神)의 하나로서 복을 불러들이는 신이 되었다. 다이코쿠마이는 근세에 걸쳐 정월에 다이코쿠텐으로 분장하여 집집을 순회하면서 추었던 춤이다.

엔부리는 삽입된 노래나 춤도 매우 세련되고 일본 각지에 전해지고 있는 예축 행사 중에서도 가장 예능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원형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다아소비와 가장 예능화가 진행된 엔부리를 어떤 관계로 파악할 것인가가 중요한 안건이 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두 의례를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연속적으로 파악하여 엔부리가 다아소비의 발전된 행태로 보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두 의례는 전혀 다른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연속성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전자의 입장은 앞에서 언급한 중출립증법의 시각이다. 여기서 민속자료의 분류나 비교는 어디까지나 ‘일본’이라는 닫힌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목적역시 일본 내의 민속의 변천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출립증법으로 다아소비와 엔부리를 분석할 경우, 양자 사이에서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설을 세울 것이며 연구자는 거기에 민속의 변천과정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사실 무형민속문화재의 ‘지정’ 내지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예능화란 다름 아닌 고전적인 일본민속학의 연구 방법과 잘 부합하는 관념이라 할 수 있다.

5. 마치며

본 논문은 일본민속학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법적 근거를 실마리로 일본의 무형민속문화재의 속성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과 달리 일본에서는 무형문화재와 무형민속문화재를 구별되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민속학이 연구해온 ‘전승문화’가 사회에 정착되면서 무형민속문화가 독자적인 지식체계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속문화재 보호가 시작된 것은 1950년대였는데 1975년부터는 ‘지정’제도 및 ‘선택’제도를 설치하여 무형민속문화재로서 보호하게 되었다.

현재 무형민속문화재는 풍속습관, 민속예능, 민속기술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1950년대 당시는 풍속습관만이 보호의 대상이었다가 개정을 거듭하면서 순차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풍속습관의 ‘지정’ 및 ‘선택’의 기준으로서는 ‘생활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란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민속학의 전통적 연구대상이었던 민간전승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그 배경으로서 당시 일본 국내에서 민간전승이란 지식체계가 정착되어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일본 민간전승 중에서 핵심적인 기층문화로 생각되었던 것은 도작문화였으며 민속학자들의 관심도 이에 몰렸었다. 그런데 그동안 민족학, 고고학, 농학 등에서 도작문화의 기원이나 전파경로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누적되어 일본과 아시아의 문화적 계통관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속학들은 이를 외면한 채 오로지 ‘일본’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연구를 추진해 왔다.

70년대에는 무형민속문화재에 민속예능 영역이 추가되었는데 거기에서 ‘지정’ 및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예능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민속의 변천과정을 중시하는 일본민속학의 고전적 방법인 중출립증법의 시각이 ‘지정’ 및 ‘선택’의 기준으로 수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예능화는 변천과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민속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이처럼 무형민속문화재의 ‘기준’ 및 ‘선택’의 기준에는 일본민속학의 대상이나 방법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일본의 민속문화재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중출립증법에서는 민속자료의 분류 및 비교 작업이 오로지 ‘일본’이란 닫힌 시스템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관계로 일본 밖의 자료를 고려해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본의 기층문화는 인근 지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더구나 일본 전파된 당시의 도작문화는 이미 완성된 상태로써 풍부한 민속을 갖춰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예능화는 벼농사가 일본에 전파되기 전에 이미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일본 국내에서만 예능화를 고찰한다면 중요한 요소를 빠뜨릴 우려가 있다. 즉 일본의 농경문화는 한국이나 중국의 의례와의 분류나 대조 작업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민속문화재 시책은 일본민속학의 고전적 방법론에 내포된 문제점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이에 대한 비판이 일본민속학 내부에서도 제기되어 ‘일본’ 대신 ‘집락’이나 ‘지역’과 같은 작은 범주를 설정해서 연구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끝내 ‘동아시아’와 같은 광역 범주를 설정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것이 일본민속학의 방법론적 한계라 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방법 이전에 일본인의 단일민족설을 표방했던 야나기타의 연구 목적 자체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민속문화재 시책에는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의 탈각이 요구된다. 1975년의 문화재 보호법 개정 때 ‘선택무형민속문화재’의 ‘선택’ 기준으로서 ‘다른 민족과 관련되는 무형민속 문화재이면서 일본국민의 생활 문화와의 관련성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란 조항이 추가된 바 있다. 이 조항이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일본인의 생활문화의 규명에 한(韓)민족을 비롯한 동아시아 도작민의 민속과의 대조가 필수적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선택무형민속문화재’뿐만 아니라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지정’ 기준에도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參考文獻】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2352호 일부개정 2014.01.2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3.12.30)
세키네 히데유키(2011)「도리이 류조(鳥居龍藏)와 오카 마사오(岡正雄)의 일본민족 기원론- ‘문화전파’와 ‘민족이동’의 관점에서 -」『동북아문화연구』제29집, 동북아문화학회, pp.557-575
(2009)「일본문화의 원류로서의 남방계 문화연구 - ‘전파’와 ‘민족이동’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접근」『日本文化研究』제31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403-429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민속학」
岡正雄(1979)『異人その他 -日本民族=文化の源流と日本国家の形成』言叢社, pp.18-36
佐々木高明(1993)『日本文化の基層を探る -ナラ林文化と照葉樹林文化-』日本放送出版協, p.96
佐野賢治(1999)「重出立証法」『日本民俗大事典』上, 吉川弘文館 p.817
白石太一郎(2006)「倭国の形成と展開」『古代史の流し』列島の古代史 ひと・もの・こと 8, 岩波書店, p.10
平山和彦(1999a)「基層文化」『日本民俗大事典』上, 吉川弘文館, p.463
平山和彦(1999b)「民間伝承」『日本民俗大事典』下, 吉川弘文館, p.632
文化財保護委員會 告示 第59號(1954)
文化財保護法(1950.5.30 法律 第240号)
文化庁 告示 改正 第17號(1975)
文部省 告示 第156號(1975)
Benedict Anderson(1983)“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검색일, 2014. 3.20)
<http://ja.wikipedia.org/wiki/%E6%B0%91%E4%BF%97%E5%AD%A6>(검색일, 2014. 3.20)(ウエキペディア「民俗学」)
<http://ja.wikipedia.org/wiki/%E6%B0%91%E4%BF%97%E6%96%87%E5%8C%96%E8%B2%A1>(검색일, 2014. 3.20)(ウエキペディア「民俗文化財」)
<http://ja.wikipedia.org/wiki/%E9%87%8D%E8%A6%81%E7%84%A1%E5%BD%A2%E6%B0%91%E4%BF%97%E6%96%87%E5%8C%96%E8%B2%A1>(검색일, 2014. 3.20)(ウエキペディア「重要無形民俗文化財」)
http://kunishitei.bunka.go.jp/bsys/index_pc.asp(검색일,2014.3.25)(文化庁 國指定文化財等データベース)
<http://members2.jcom.home.ne.jp/ichikondo/02%20tasobikitanojinnja.html>(검색일, 2014.3.30)

논문투고일 : 2014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0일

 <要旨>

일본의 무형민속문화재의 속성과 문제점

본 논문은 법적 근거를 실마리로 일본의 무형민속문화재의 속성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본의 문화재 체계에는 ‘무형문화재’와 별개로 ‘무형민속문화재’라는 영역이 설정되어 있다. 그 지정 기준으로 ‘생활문화가 잘 나타나 있는 것’과 ‘예능으로서 변천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사실, 이 기준은 ‘일본민속학’이 전통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아 왔던 ‘민간전승’과 ‘민속의 변천과정’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기층문화가 외래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민속학은 동아시아와 일본의 문화적 계통관계를 외면하고 ‘일본’이란 제한된 범주로 민속을 연구해 왔다. 마찬가지로 무형민속문화재 지정 기준에서도 동아시아 민속과의 연관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범아시아적인 관점의 민속문화재 시책이 요구된다.

Attributes and problems of intangible folk cultural assets of Japan

This paper aimed at investigating the attributes and problems of intangible folk culture assets of Japan in terms of the legal basis. The domain “intangible folk cultural assets” is set apart from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s” in the cultural-assets system of Japan. “Something in which life culture is expressed well”, and “something in which the artistic process of change has appeared well” are given as evaluation standards for the designation. As a matter of fact, these standards are reflecting the “folklore” and “the changes process of folk customs”, which the academic circles of Japanese folklore have traditionally regarded as subjects of research. Although the basics of Japanese culture are of foreign cultural origin, the academic circles of Japanese folklore have constantly disregarded the cultural genealogical relationship of Japan with the rest of East Asia. They also have studied folk customs only in the restricted category of “Japan.” Similarly, relevance with the East Asia folk customs is underestimated in the evaluation standards of the designation of intangible folk cultural assets. The policy for folk cultural assets of Japan should be promoted from a Pan-Asian point of view.